

##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등 업무 위·수탁계약서

철도안전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 등 업무에 대한 위·수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계약은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등 업무위탁과 관련 위·수탁자간의 상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위탁의 범위)** 업무위탁의 범위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,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구분, 자격부여, 자격부여 관련 자료의 유지·관리 등에 관한 업무로 한다.

**제3조(위탁 기간)**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으로 하며, “갑”과 “을”의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 5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.

**제4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격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자격부여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탁업무를 지연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5조(분야별 수탁기관)** 분야별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 등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철도운행안전관리자 : (사단법인)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
2. 철도안전전문기술자
  - 가. 철도전차선분야 : (사단법인)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
  - 나. 철도신호분야 : (사단법인)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
  - 다. 철도궤도분야 : (사단법인)한국철도시설협회

**제6조(자격기준)**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.  
②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.

**제7조(자격부여 등)** “을” 은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교부대장에 기록하고,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는 전산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비밀누설금지)** “갑과 “을” 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
2. 심리, 중재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
3. 비밀유지의무 부여 하에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,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

**제9조(수수료)** “을” 은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 교부 등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도안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을 정하여 “갑”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10조(협의회 구성)** “을” 은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심사 및 관리 업무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공동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지도·감독) ①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위탁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수 있다.
- ② “을”은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증명서 교부현황 등을 매분기 악월 10일까지 “갑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제12조(계약 위반시의 책임) ① “갑”은 수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.
- ② “갑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탁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“을”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“을”은 위탁업무가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부여 등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“갑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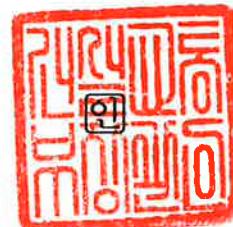
- 제13조(계약의 변경) “갑”과 “을”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

- 제14조(기타)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조항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“갑”의 해석에 따른다.

- 제15조(효력) ① 이 계약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계약서에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5부를 작성하고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7. 6. 2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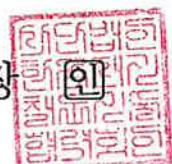
위탁기관(갑) : 건설교통부장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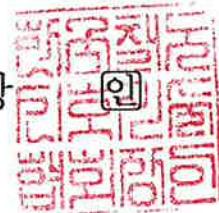
수탁기관(을) : (사단법인)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장



(사단법인)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장



(사단법인)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장



(사단법인)한국철도시설협회장

